

피 해 자 신 고 서

※ 해당되는 []에 √ 표를 합니다.

피해 사건명	[] 「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건(이른바 "한센인 격리·폭행사건"을 말합니다)
	[] 「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건(이른바 "84인 학살사건"을 말합니다)
	[] 「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사건(이른바 "오마도 간척사업사건"을 말합니다)
	[] 「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건

피해자	성명(한자)		성별	[] 남 [] 여
	주민등록번호		전화번호	
	등록기준지			[] 사망 [] 행방불명
	주소			

신고인	성명(한자)		생년월일	
	주소			
	피해자와의 관계		전화번호	

피해상황 주요내용	※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합니다.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「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위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(유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) 또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사망자나 행방불명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제적등본 1부. 다만, 제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2. 「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사건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국립종합병원, 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1부 3. 그 밖에 피해 내용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. 다만, 해당 자료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사실 확인 보증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.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